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s liability)

윤 동 혁
(대구 지부장)

1. 머리말

배상 책임 보험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을 '일의 결과'에 한정시킨 책임 보험을 말한다. 즉,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상품 혹은 시공한 일의 하자에 기인하여 소비자나 이용자 등이 입은 신체 장애 또는 재물 손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이른바 제조물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근년에 들어와 사회 경제의 구조가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각종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 사고가 늘어나 피해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여러 가지 수출 상품에 대하여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 판매되어 오다가 최근 이

보험의 사회성이 주목을 끌게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보험의 대상

가. 생산물 위험(products hazard)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상품(보험 증권에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 배상 책임이다.

생산물은 구체적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완성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각종 부품도 포함되며 특히 명기하지 않더라도 '용기', '포장'도 생산물에 포함하고 있다.

나. 작업의 결과 위험(completed operation hazard)

피보험자가 행한 작업(보험 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결과로 인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에 생긴 사고로 부담하는 손해 배상 책임이다. 예를 들면, 완성 직후의 호텔 엘리베이터가 낙하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그 제조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이다.

3.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생산물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예시와 같다.

가. 상품의 제조자 : 생산물 책임 보험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피보험자이다.

나. 자기 상표의 판매상(brand dealer) : 종합 상사, 백화점 등 타인에게 제품을 만들게 하여 그 제품을 자기 상표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소비자에 대한 관계는 제조자와 동일한 입장에 서는 것으로 본다.

다. 수입품 판매상(vender) : 외국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도 자기 상표의 판매인과 같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소비자에 대한 관계는 제조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도매상 및 소매상 : 이들이 생산물 책임을 추급(追及)받을 가능성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생선 등과 같이 유통 과정에서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상품의 선택이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지도할 필요가 있는 복잡한 상품인 경우 이들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 음식점, 급식업자 등 : 음식물이 원인이 되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생긴다.

바. 시공업자, 공사업자 : 작업의 완료 후의 결과 책임을 추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보험자의 보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결합있는 상품이거나 결합있는 작업으로 그 상품 또는 작업이 타인에게 인도되거나 완료된 후에 생긴 사고로 한정된다.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재물이 타인에게 인도된 후, 타인에게 입힌 손해 배상만을 한정하여 담보하는 위험과 손해는 우연한 사고이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가 명확한 것으로서 보험 기간중에 생긴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보험 기간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나 보험 기간중 판매한 재물로 인한 손해라 하여도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이 특별 약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면, 현재 미국의 배상 책임 보험에 있어서는 사고의 개념을 Accident Base에서 Occurrence Base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Occurrence라함은 보험 기간중에 신체 장애나 재물 손해를 야기시키는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며,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동일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또한,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일련의 사고로서 1사고로 보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Accident는 장소와 때

를 명확히 하여 생긴 개개의 사고로서 사고와 더불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Occurrence Base에 의한 배상 책임 보험이 담보 범위가 넓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생산물 배상 책임의 담보 위험을 예를 들면, 제조한 전자 근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감전 사망했다거나, 전기 담요의 조절 장치 불량 때문에 과열이 되어 화재가 발생, 사용자의 가옥이 소실된 사례 또는, 자동차의 정비 작업 하자로 인하여 바퀴가 탈락하여 운전자나 통행인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보험의 Claim처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가. 당해 생산물이나 일에 발생한 손해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는가(하자의 존재와의 인과 관계)

나. 그와 같은 하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다. 하자가 존재한 일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라. 피해자 측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는 없었는가 등을 검토하여 보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를 하자, 과실, 인과 관계, 책임 주제로 나누어서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瑕疵)

제조물 책임이 상품이나 일의 하자에서 생긴 결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에서 우선 '하자란 무엇인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하자는 설

계상(구조상)의 하자, 제조상의 하자, 지시상의 하자, 개발도상의 하자의 네 가지가 있다.

① 설계상의 하자

제조자는 상품을 그 목적에 따라 합치하고 또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것을 충족시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게 된다.

이 하자의 유무는 당해 상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또는, 통상 예견되는 사용 방법을 전제로 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설계시의 기술 수준이나 당해 상품의 안전 법규의 준수 상황도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② 제조상의 하자

제조 공정에 있어서 기계의 부조(不調)따위 때문에 발생한 규격의 제품에 있어서의 하자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상품 본래의 품질 성능에서 벗어난 제품이 대상이 되므로 하자 그 자체의 인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상품 검사 의무와의 균형에서 제조자의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

③ 지시상의 하자

제품 그 자체에 대한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위험한 부작용을 수반하거나 사용할 때에 위험이 수반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나 경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

④ 개발도상의 하자

제품의 제조 단계에 있어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험한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과실 책임의 범리를 전제로 하면 제조자는 이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 과정에 둔 후, 계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관찰하고 있으면, 사고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설도 있다.

(2) 과실

과실 책임 주의 법리하에서는 하자의 존재에 대해 제조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조물 책임의 여부를 다루는 최대의 초점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 측면에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실제상 큰 곤란을 수반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과실에 의한 실질적 거증 책임의 전환, 혹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한 실질적 무과실 책임화 등 갖가지 해결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 중에서 제조업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한 무과실 책임화의 움직임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3) 인과 관계

제조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가 부과되고, 과실의 입증 책임이 전환 내지 경감된다 하더라도 하자와 손해의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입증은 손해가 하자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입증외에, 상품이 제조자의 손을 떠났을 때에 이미 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도 포함하는 것이다.

제품의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이 면에서의 곤란성을 줄이기 위해 인과 관계는 반드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아도 중에 하자가 생겼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면, 인과 관계를 인정해도 좋다는 설이 주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약품의 제조물 책임 추궁의 장소에 있어서 역학적 인과 관계의 증명을 가지고 법적 인과 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려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4) 책임 주체

제조물 책임의 책임 주체는 제조자에게 그치지 않고, Dealer, 소매상 나아가서는 설치·보안점검·수리업자 등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해 상품의 제조 유통의 어느 과정에서 하자가 작출되고, 증폭되고 또는 간과되었느냐에 따

라서 책임의 유무를 정해 나가게 된다. 그중에서 소매상과 물건을 사는 사람처럼 일정한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결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불완전 이행. 민법 제 389조)으로 파손되어 Maker 소비자와 같이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간의 책임 관계와 대비하여 법적 접근을 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간의 상이는 결국 피해자 측에서 상대 과실의 거증 책임을 부담하느냐 않느냐 하는 점에 끝나는 것이며 그밖의 점 즉, 하자의 인정, 인과 관계의 입증 등에 대해서는 특히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의 거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불법 행위 책임 범규의 수정에 의해 피해자 측의 거증 책임의 경감·전환이 피해지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실무상 계약 관계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여 책임 관계를 말하는 실익

은 적다고 생각된다.

또 보험 실무상의 문제로는 통상 일정 메이커의 제조물에 대해서는 Maker, Dealer, 소매상, 기타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일질의 업자를 일괄하여 공동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책임 주체의 판정 및 이에 수반하는 법적 구성의 구분 사용은 특히 문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5. 보험자의 면책 사항

가. 생산물 손괴 자체의 배상 책임

생산물 특별 약관에서는 생산물 또는, 일의 하자에 기인하는 당해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손괴 자체(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일부의 하자로 인한 당해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다른 부분의 손괴를 포함함)의 배상 책임을 면책으로 하고 있다.

담보 위험의 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생산물 또는 일의 결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결과 손해(확대 손해라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에 관계되는 배상 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1) 일의 목적물 인정

일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일의 내용이 가공·수리 중인 경우에는 비교적 인정이 용이하거나, 일의 보안·점검·소독·청소 등인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일의 목적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점의 해석, 운용에 있어서는 본 면책 규정의 근본 취지 즉, 공정 불량 등으로 대표되는 일의 하자의 보수 비용을 부담보로 하는 취지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일의 목적물이라는 어의(語意)에 구득된 경직적인 운용은 피해야 한다.

(2) 다른 부분의 해석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다른 부분의 해석 문제는 우선, 하나의 생산물(또는 일의 목적물)의 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게 된다.

예를 들면, 동일 메이커 제조의 전기 냉장고와 스테레오 세트를 동시에 판매했다는 사례를 상상해보자. 이 경우 전기 냉장고와 스테레오와의 상호 관계는 생산물의 다른 부분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각기 별개 독립의 생산물임은 명백할 것이다.

다음에 스테레오 세트 속의 플레이어, 앰프, 스피커 등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겠는가. 이것을 생산물의 다른 부분이라고 볼 것이냐, 타물이라고 볼 것이냐는 하자의 내용, 손해 발생의 양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3) 당해 생산물 자체의 사용 불가능 손해의 취급

약관 문안상 생산물 또는 일의 목적물의 손괴 자체의 배상 책임 부담보라는 표현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손괴로 인해 생긴 사용 불가능 손해의 유무책임 때로는 문제가 되는데 생산물의 손괴 자체를 면책으로 하면서 손괴로부터 파생하는 확대 손해만을 담보할 말의 근거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복수 기제로 구성되는 plant를 납품하고, 그 중 한 기제의 하자로 인해 plant 전체가 손괴되어 가동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혹은 브레이크만을 수리하였는데 그것의 하자로 자동차 전체가 손괴되어 사용 불가능이 된 경우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는다.

나. 법령 위반 사항

생산물 특별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에 기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다. (약관 2-②)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생산물이나 일의 내용에 따라서 구구하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약사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가스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유독물질을 함유한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보통 약관상의 면책 규정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보통 약관의 면책 규정에 대해서 언급해 보면, 약관에 의한 가능 책임 면책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Dealer와 소매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메이커의 계약 책임이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메이커가 부보하는 계약에 추가해 두면 가령 가중 책임 면책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품에 대해서 실시되는 통상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상품 일반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기대되는 책임이므로, 계약상의 가중 책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